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20484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15.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5. 선고 2019가합48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각서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319,803,000원)과 이 사건 경작확인서에 따른 108개월(이 사건 경작확인서 작성일인 2000. 3. 28.부터 이 사건 확약각서 작성일인 2009. 5. 15.까지 중) 동안의 월세(54,000,00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제1심판결의 이유 3의 나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각서 및 이 사건 경작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경작확인서의 경우, 원고는 2000. 3. 28. 원고, 피고 및 L(피고 이모부의 형)이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피고는 위 경작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고 원고 주장의 시점에는 원고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경작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근저당과 매매계약에 영수한 금액은 무효로 하고’) 중 근저당의 경우 2001. 9.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24일 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확약각서의 경우, 원고는 당심 준비기일(1차)에서 ‘2009. 1. 또는 2.경 F이 원고 몰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뒤늦게 알고 원고가 피고, F, L 등을 고소하려 하자 L이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백지를 받아와 원고가 그 제목과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고가 그 제목과 내용을 기재한 상태에서 L에게 피고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올 것을 요청하여 L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서명과 날인을 받은 후 원고에게 다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확약각서의 작성 및 교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위 확약각서에 기재된 내용(‘F이 상속등기 후 실소유자 원고 부부에 본등기를 한 뒤 3건의 가등기 말소 접수할 때 말소비 1,500만 원과 현지 시세를 기준 정산’) 중 F의 상속등기의 경우 1995. 3. 12.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05. 3. 25. 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5. 7. 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2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약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① 원고가 M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797호)에서 피고가 2007. 3. 27.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4,2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4. 18.까지 피고를 상대로 아무런 이의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다가 매매대금을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도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원고는 2003.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잔금 중 770만 원을 영수하고, 2005. 3. 28. 서류 이전 접수시 근저당 등 확인 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④ 위 770만 원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01. 9. 24.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피고는 2005.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8. 24.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2002. 7. 18. 9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 4. 3.부터 2006. 6. 23.까지 4차례에 걸쳐 2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2009. 5. 15.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모두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확약각서 및 이 사건 경작확인서를 작성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이재신, 판사 김영현